

의 안 번 호	제 호	의 결 사 항
의 결 연 월 일	2022. . . (제 회)	

대 학 설 립 · 운 영 규 정

일 부 개 정 령 안

제 출 자	국무위원 000 (교육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22. . .

법 제 처 심 사 전

1. 의결주문

대학설립·운영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4차 산업혁명을 맞아 반도체 등 첨단분야의 인력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첨단분야 인재양성을 촉진할 수 있도록 대학의 정원 기준 완화 필요

현재 대학원은 교원확보율만 충족하면 첨단분야의 증원을 허용하고 있으나, 학부는 교지, 교사, 교원, 수익용기본재산의 4대 교육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

이에 학부도 대학원처럼 4대 교육요건 중 교원확보율만 충족하면 첨단분야의 정원을 증원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가. 대학이 교원확보율을 충족하는 경우 첨단분야의 정원 증원을 허용(안 제2조의3제2항 개정)

나. 국립대학이 첨단분야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정원 증원 시 전임교원 확보율이 70% 이상(기존 80%)일 경우 교원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(안 제2조의3제7항 개정)

다. 대학이 총입학정원 범위 내에서 정원을 자체 조정하는 경우 유지해야 하는 교원확보율 기준 폐지(안 제2조의3제4항 삭제)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 예정

대학설립·운영 규정 일부개정령안

대학설립·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“제4항”을 “제2항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대학원이”를 “대학이”로 하며,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하고, 같은 조 제7항 중 “80퍼센트”를 “70퍼센트”로, “기준을”을 “기준 및 제2항제1호의 기준을”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(다른 법령의 개정) 고등교육법 시행령 별표4의 2.개별기준 중 ‘어.

「대학설립·운영 규정」 제2조의3제4항을 위반하여 자체조정 후의 교원확보율을 편제완성연도의 계열별 학생정원을 기준으로 한 전년도의 확보율 이상으로 유지하지 못한 경우’를 삭제한다.

제3조(적용례) 이 영은 2024학년도 정원 조정부터 적용한다.

제4조(경과조치) 이 영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행정제재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[illegible]

터 등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첨단산업 분야의 인력을 양성하거나 「고등교육법 시행령」 제13조제1항에 따라 다른 국내대학과 공동으로 대학원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하여 학과 또는 전공을 증설하거나 학생정원을 증원하는 경우에는 그 증설 또는 증원분을 포함한 전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면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 적용하지 않는다.

1. 2. (생략)

③ (생략)

④ 대학이 전년도 총 입학정원의 범위에서 학위과정별로 학과등을 신설·통합하거나 학과등의 입학정원을 조정(이하 “자체조정”이라 한다)하는 경우에는 자체조정 후의 교원확보율을 다음 각 호의 비율 중 낮은 비율 이상으로 유지해야 한다. 다만, 대학이 인공지능·빅데이터 등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첨단산업 분야의 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전년도 총 입학정원

-----.

1. 2. (현행과 같음)

③ (현행과 같음)

<삭 제>

의 범위에서 자체조정하는 경우
에는 자체조정 후의 교원확보율
을 다음 각 호의 비율과 편제완
성연도의 계열별 학생정원을 기
준으로 한 90퍼센트의 교원확보
율 중 가장 낮은 비율 이상으로
유지할 수 있다.

1. 편제완성연도의 계열별 학생
정원을 기준으로 한 전년도
교원확보율

2. 편제완성연도의 계열별 학생
정원을 기준으로 한 직전 3개
년도의 평균 교원확보율

⑤・⑥ (생 략)

⑦ 「고등교육법」 제3조에 따
 른 국립학교가 해기사(海技士)
 등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
 는 특정 분야의 인력을 양성하
 기 위하여 학과등을 증설하거나
 학생정원을 증원하는 경우에는
 그 증설 또는 증원분을 포함한
 전체에 대하여 제6조(같은 조
 제4항은 제외한다)에 따라 확보
 해야 하는 교원 수의 80퍼센트
 이상을 확보하면 제1항 각 호
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기준 중

⑤・⑥ (현행과 같음)

⑦ -----

 ----- 70퍼센트

교원의 확보 <u>기준을</u> 충족한 것으로 본다.	----- <u>기준 및 제2항제1호</u> <u>의 기준을</u> ----- -----.
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교육부 고등교육정책과	
연 락 처	(044) 203 - 6921, 6664